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
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권덕철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애인의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으로 정한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332호, 2021. 7. 27. 공포, 2022. 7. 28. 시행)됨에 따라,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산업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2호라목 중 “보청기기”를 “보청기기, 장애인용 쇼핑카트”로 한
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307

참고

신·구 대비표

현행			개정안		
[별표 3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3조 관련) 2, 개별기준			[별표 3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3조 관련) 2, 개별기준		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가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법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(예비인증을 포함한다)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아니한 경우	법 제27조 제1항제1호	200만원	가.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--	-----
나. 법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	법 제27조 제1항제2호	200만원	나. ----- -----	----- -----	-----
다. 법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·기피·방해한 경우	법 제27조 제1항제3호	200만원	다.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--	-----
라.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, 점자 안내책자,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27조 제1항제4호	100만원	라. ----- --- 보청기기, 장애인용 쇼핑카트 ----- -----	----- ----- -----	-----
마. 법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27조 제1항제5호	100만원	마.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--	-----
바.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	법 제27조 제3항제1호	10만원	바.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--	-----
사.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	법 제27조	10만원	사. -----	-----	-----

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	제3항제2호		----- ----- -----	-----	
아.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	법 제27조 제2항	50만원	아. ----- -----	----- -----	-----